

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 의 자 : 박성연 의원 외 26명
- 나. 의안번호 : 제 749 호
- 다. 발의일자 : 2023. 5. 26
- 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

2. 제안이유

- 현재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행하는 위험직무의 특성상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우울증,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자살률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은 물론 OECD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- 또한,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시행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사항들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하고,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의료기관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제7호 신설).
- 나. 시장의 책무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3조).
- 다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내용으로 소방공무원 정신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신설).
- 라.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복지지원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복지지원사업 규정을 분리하여 신설함(안 제8조의2 신설).
- 마.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의3 신설).
- 바.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(안 제 12조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,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, 우울증, 수면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
-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그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려는 점에서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음.

[표] 개정안 수정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소방전문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증진, 정신건강증진</u>----- -----.</p>

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<신설>
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) ① ~ ⑥ (생략)

<신설>

③ -----

-----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-----
--- 현황, 정신건강-----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2(후생복지사업의 지원)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공상, 모범·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·외 견학

2.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

3.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·행사비·물품구입비 지원
4.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
5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
6.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
7.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
8. 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
9.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프로그램 운영
10.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
11.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
12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<신 설>

제8조의3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비용 지원
2. 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
3.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4.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
5.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12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) ①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,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심의
2.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제8조의2에 따른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4. 제8조의3에 따른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
2. 공무원단체(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, 「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공무원
3.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
4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.
- 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■ 주요골자별 의견

가. 소방전문 의료기관 정의 추가 관련(안 제2조제7호)

- 안 제2조제7호의 신설은, 기존 정의에 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,

- 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은 상위법령인 “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(이하, ‘소방공무원복지법’이라 함)제10조1)에 따라 소

- 1) 제10조(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) ①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.

- 다만, 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은 소방공무원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, 소방전문 의료기관 내에 소방전문치료센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조례안의 정의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. ([표] 참고)

[표] 수정의견(안) 조문대비표 (안 제2조제7호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견 (안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략) <신설>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“소방전문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 1. ~ 6. (개정안과 같음) 7. “소방전문 의료기관”이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(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나.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의3)

- 안 제3조제2항과 제3항은, 시장의 책무로써 현행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필요한 시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책무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그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추가하고, 이를 위해 같은 조 제6항을 신설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안 제5조제2항제4의2호 신설은,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‘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’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며, 안 제6조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정신건강도 반영토록하려는 것임.
- 다음으로, 안 제8조의3 신설은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부적인 지원사항과 재정적지원,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「소방공무원복지법」 제7조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은 5년마다 수립하고, 기본계획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,
- 이처럼 상위법령의 기본계획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본 개정안에서 시장의 책무로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신건강으

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특화된 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취지로 이해되어 긍정적인 조치라 여겨짐.

- 다만, 개정안 제5조제2항제4의2호의 경우 가지조문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조례의 정합성을 위해 호번호 ‘4의2’를 ‘제5호’로 하고, 현행 ‘제5호’를 ‘제6호’로 하는 한편, 제8조의3제3항과 제4항의 ‘관련기관’의 경우 현행 제8조제5항에 시장에게 소방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‘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’ 등으로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.

[표] 수정의견(안) 조문대비표 (안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의3 관련)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(안)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생략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 <u>증진, 정신건강증진</u> ---- -----	②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
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</u> ----- -----	③ ----- -----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④·⑤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⑥ <u>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 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</u>	⑥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(이하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5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① 시장은 「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」 제8조

②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. -----
----- (현행과 같음) -----

제6조(실태조사) ① -----
----- 현황,

정신건강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의3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)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

제5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

①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②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
5.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6. -----

제6조(실태조사) ①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②·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8조의3(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) ① -----

	<p>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 비용 지원</u></p> <p>2. <u>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</u></p> <p>3. <u>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</u></p> <p>4. <u>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</u></p> <p>5. <u>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u></p>	<p>----- ---.</p> <p>1. ----- -----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3. ----- -----</p> <p>4. -----</p> <p>5.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----- ----- -----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 ----- -----</p>
--	--	---

다. 후생복지 사업지원 관련(안 제8조, 제8조의2조)

- 안 제8조와 안 제8조의2의 신설은, 기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사업이 함께 규정되어 있던 것을 각각의 사업으로 분

리하여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조례 체계를 갖추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즉, 현행 제8조의 조제목에서 복지사업을 분리하여 '소방공무원 보건안전'으로 하는 한편, '복지사업'과 관련해서는 안 제8조의2를 새로이 신설하여 조제목을 '후생복지사업의 지원'으로 하고 있음.

- 여기서, 안 제8조의2제1호의 경우 복지지원 사업으로 '공상, 모범·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·외 견학'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제7조2)에 따르면 '우수·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'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.
- 또한, 동 개정안의 발의자인 박성연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750호 「서울특별시 순직·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안」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안 제8조의2제4호, 제7호, 제8호는 삭제하여 관련 내용을 의안번호 제750호의 조례안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조례 간 중복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2) **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**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단,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우수·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
2. ~ 14. (생략)

[표] 수정의견(안) 조문대비표 (안 제8조, 제8조의2조 관련)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(안)
<p>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) ① ~ ⑥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의2(후생복지사업의 지원)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공상, 모범·우수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국내·외 견학</u></p> <p>2. <u>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</u></p> <p>3. <u>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·행사비·물품구입비 지원</u></p> <p>4. <u>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원</u></p> <p>5. <u>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</u></p> <p>6. <u>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</u></p> <p>7. <u>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지원</u></p> <p>8. <u>순직 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</u></p> <p>9. <u>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</u></p> <p>10. <u>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</u></p> <p>11. <u>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</u></p>	<p>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) 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의2(후생복지사업의 지원)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</p> <p>1. ----- -----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·포상·문화유적지 시찰</p> <p>2.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</p> <p>3.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</p> <p><삭제></p> <p>4.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</p> <p>5.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6.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</p> <p>7.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 -----</p> <p>8. -----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</p>

	비 지원	-----
	12.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	9. -----
	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	----- (개정안과 같음)-----
	업	--

라. 소방공무원 보건의안전 및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관련(안 제12조)

- 안 제12조의 신설은, 보건의안전 및 후생복지, 정신건강증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의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는 한편, 위원회의 심의사항,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(담당 과장)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 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, 성별간 균형을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, 위원 선임기준은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혹은 소방령, 공무원단체에 서 추천하는 공무원,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, 그 밖에 소 방공무원 보건의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 구성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건의안전 및 후 생복지 유형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합리적이라 하겠음.
- 다만, 안 제12조제4항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토록하고 있는 데 ‘위촉’은 외부 기관이나 외부 사람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길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로 위원 중에는 내부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바 ‘위촉하는’을 ‘임명 또는 위촉하는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
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
한다.

1.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
소방령

2. 공무원단체(「공무원의 노동
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
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
무원노조, 「공무원직장협의
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
률」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
직장협의회를 말한다)에서
추천하는 공무원

3.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
임직원

4.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
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
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
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
다.

⑥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
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.

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
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
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
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
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
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

----- 임명 또는 위촉하는
-----.

1. -----

2. -----
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3. 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4.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⑤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-----.

⑥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-----.

⑦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-----.

⑧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-----.

⑨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 -----

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.

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
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
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
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----.

⑩ -----
----- (개정안과 같음)-----

-----.